【붙임1】

논문심사위원 위촉 시 유의사항

대학원교학팀(2024.04.)

심사위원의 선정 근거	**대학원시행세칙** 제35조 (심사위원 선정) ① 각 학과장(전공주임)은 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 심사위원을 각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하며 각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들의 자격여부를 심의한 후 구술시험 및 논문의 심사를 위촉한다.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인(내부 2인 이상),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인(외부 2인 이상)으로 하며 논문 지도교수를 포함한다. ③ 전항에 규정한 **심사위원 자격은 본교 소속의 전임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며, 전공의 성격에 따라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계의 권위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.** 박사학위과정의 심사위원 중 3인 이상은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.
심사위원의 자격 및 구성	1. 심사위원 자격 ① **본교 전임교수 또는 그의 준하는 자(타 대학 전임교원 가능)** ② 지도교수가 추천한 학계의 권위자 2. 심사위원 구성 ①【석사】3인(내부 2인 이상) ②【박사/통합】5인(외부 2인 이상) (**내부 2인 필수**- 심사위원장, 논문지도교수) 5인중 3인 이상은 박사학위 소지자 * 본교에서 강의를 하는 비전임교원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반드시 외부기관 소속으로 위촉해야함 (예시) 한국사회복지관 홍길동관장이 본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시 외부 심사위원 위촉 자격은 '한국사회복지관 관장'이어야 함)
심사위원 위촉가능교수	① 공동지도교수, 연구년교수, 논문지도교수 위촉 가능 ② 단, 공동지도교수의 경우에는 1인만 논문심사에 참여할 수 있음
심사위원장	① **본교 전임교수** ② 단, 논문지도교수는 위원장 위촉 제외
기타	외부 심사위원이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 외부 심사위원 신청사유서 제출

★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Q&A 사례

질의)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심사 시,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, 숙박비,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? **답변)**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·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합니다.